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고, 해당 검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운영을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을 명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4. 0. 00.~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란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중소벤처 기업부장관	스마트 제조 관련 분야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별표 6 산림청란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중소벤처 기업부	중소벤처기업부장관	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-------------	-----------	---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288